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제정	2012. 9. 28. 교원인사위원회
1차 개정	2012. 10. 16. 교원인사위원회
2차 개정	2012. 11. 13. 교원인사위원회
3차 개정	2013. 4. 4. 교원인사위원회
4차 개정	2013. 10. 1. 교원인사위원회
5차 개정	2014. 4. 11. 교원인사위원회
6차 개정	2015. 5. 1. 교원인사위원회
7차 개정	2015. 9. 22. 교원인사위원회
8차 개정	2017. 4. 7. 교원인사위원회
9차 개정	2018. 4. 30. 교원인사위원회
10차 개정	2018. 10. 23. 교원인사위원회
11차 개정	2019. 10. 30. 교원인사위원회
12차 개정	2020. 3. 31. 교원인사위원회
13차 개정	2021. 3. 18. 직 권 수 정
14차 개정	2024. 3. 22. 교원인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채용절차) 전임교원 신규임용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확정
2.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3. 서류심사
4.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5. 교육능력심사
6. 면접심사

제3조(충원분야 및 인원 결정) 총장은 학교의 정책, 교원 수급 계획, 대학(원) 및 학부(과) 발전계획,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취업률, 학과평가결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원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3.22.>

제4조(충원분야 및 인원 법인 승인) 총장은 결정된 충원분야 및 인원에 대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확정) ① 공개채용 대상 학부(학과, 전공, 교실, 전문대학원)(이하 “학부(과)”라 한다)에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세부기준을 설계하여 심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심사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3.22.>
② 제1항에 따라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수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자
2. 접수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다만, 아래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7., 2018.4.30.>
 - 가. 의과대학 임상의학(병리학, 예방의학교실 직업환경의학 포함) 전공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8.4.30., 2019.10.30.>
 - 나.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력 소지자 <개정 2018.4.30.>
 - 다.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법학전문대학원 실무분야 교원 등) <개정 2018.4.30.>
3.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게재된 연구실적물의 양이 [별표 1], [별표 4]의 산출 방식에 따라 250점 이상인 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3., 2018.4.30., 2024.3.22.>
 - 가. 삭제 <2014.4.11.>
 - 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Nature, Science, Cell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50점 이상인 자 <개정 2012.11.13., 2018.4.30.>
 - 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병리학, 예방의학교실 직업환경의학 포함) 분야: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50점 이상인 자 <신설 2018.4.30., 2019.10.30.>
 - 라.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 및 실무분야: 미적용 <개정 2012.11.13., 2018.4.30.>

제7조(특정대학 편중 제한)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우리 대학교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2009년부터 신규 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정대학 편중 제한은 의과대학 채용분야 중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2.>

제8조(초빙공고) ① 총장은 교원 공개채용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초빙분야, 초빙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서류 접수)** ① 교원 공개채용 지원방식은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2차 지원으로 구분한다.
- ② 1차 지원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지원은 우리 대학교 교수채용사이트의 교수채용지원서 양식에 On-Line으로 입력한다.
 2. 지원자의 교육·연구 및 경력 등의 실적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입력하여야 한다.
 3. 연구실적은 대표실적과 함께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③ 2차 서류 제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2. 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단, 비전임교원의 교육경력의 경우 강의과목명과 시수가 기재되어야 함.) <개정 2024.3.22.>
 3. 최종 학위 논문
 4. 채용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개정 2018.4.30., 2024.3.22.>
 5. (삭제) <2024.3.22.>
 6. 각종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를 요하는 분야의 지원자에 한함)

제10조(심사절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총장, 해당 대학(대학원, 독립학부)장(이하 “대학장”이라 한다), 심사단계별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서류심사
2.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3. 교육능력심사
4.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5. 심사분석위원회 종합심의
6.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면접심사 대상자 추천 등) <개정 2018.4.30.>
7. 면접심사
8.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 후보자 추천 등) <개정 2018.4.30.>

-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각 단계별 심사위원 구성 시 전공, 학술 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부(과)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 추천을 위임할 수 없다.
-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3명~5명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교내·외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5명~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4.>
- ④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1/3 이상을 외부심사위원(타 대학 교원 또는

타 기관의 관련 전문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8.4.30.>

- ⑤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교내심사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외부 심사위원은 인사관리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외부 심사위원 추천 시 신설전공이나 기타 사유로 외부 심사위원 추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30.>
- ⑥ 교육능력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교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⑦ 대학공채전문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원교원인사관리위원회로 대학공채전문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 ⑧ 심사분석위원회는 인사관리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⑨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혁신부총장, 인사관리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1.>
- ⑩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와 교육능력심사위원 추천 시 지원자와의 관계(석·박사 학위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장,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출신교 재직 교원, 친인척)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여야 한다. 단, 교내심사위원의 경우 출신교 재직교원 제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 ⑪ 총장은 공채 진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각 단계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임명(위촉)하여 공채를 진행할 수 있다.
- ⑫ 삭제 <2018.4.30.>

제12조(심사위원의 책무) ① 각 심사위원장은 채용분야별로 마련된 심사지침 및 심사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야 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자별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작성한 채용지원서의 내용과 실제 연구실적물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교육능력심사위원장은 교육능력심사를 주관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서류심사위원,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 교육능력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표 8]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13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24.3.22.>

- ② 서류심사는 이 지침 제9조 2항에 의하여 지원자가 작성·탑재한 실적물을 대상으로 “연구실적물의 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채용분야와의 적합도”에 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9.22., 2018.4.30.>

③ 삭제 <2012. 10. 16.>

④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서류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3.10.1., 2024.3.22.>

⑤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 선발 범위 안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⑥ 서류심사 합격자는 전임교원 채용지원서에 명시한 각종 서류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류심사 점수는 최종 누적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① 전공적합성 심사는 학력과 채용전공분야, 연구실적물과 총원분야와의 일치 정도를 심사한다.

②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은 [별표 3]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심사위원 1/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5.5.1.>

④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심사위원이 판정한 경우라도 연구실적심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적심사는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연구실적물의 양, 대표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하되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24.3.22.>

⑥ 삭제 <2013. 10. 1.>

⑦ 삭제 <2012. 10. 16.>

⑧ 연구실적물 접수 후 최초지원서 입력이 오입력으로 밝혀져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⑨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결과의 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3배수의 교육능력심사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3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로 한다.

⑩ 교육능력심사대상자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교육능력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제15조(교육능력심사) ① 교육능력심사는 [별표 6]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교육능력심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2. 10. 16.>

제16조(점수배점)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와 교육능력심사의 점수배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8.4.30.>

구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	합계
점수배점	적합, 부적합 60점	40점	100점

제17조(심사결과 이의 신청) 교원 공개과정 중 서류심사,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전까지 구체적 사실(의견서 등)을 명기하여 대학공채전문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8조(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① 대학공채전문위원회는 학부(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와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채용예정인원 2배수의 면접심사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학부(과)에서 진행된 심사내용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분석위원회에 그 내용을 명기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8.4.30.>

제19조(심사분석위원회 종합심의) 심사분석위원회는 단계별 심사결과를 근거로 심사지침 및 기준의 준수 여부, 심사위원간의 심사 편차 및 심사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분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대학공채전문위원회, 타 대학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20조(면접심사 대상자 추천) 교원인사위원회는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단계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를 면접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심사대상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4.>

제21조(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은 면접심사 결과를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22조(임용 후보자 추천)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완료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 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제반사항과 누적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임용 후보자로 추천하되, 면접심사 종합평가에서 면접심사위원 과반수의 미흡 또는 부적격을 받은 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필요한 경우 대학장도 참석요구 가능)를 출석시켜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학, 학부(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8.4.30., 2024.3.22.>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학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외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의 유보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추천된 지원자가 임용되었을 때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임용 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4.4., 2018.4.3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임용을 유보하거나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1. 추천된 임용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개정 2018.4.30.>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추천된 지원자가 임용되었을 때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임용 취소) 신규 임용된 경우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기밀 보안) 교원 채용 단계별 심사위원 및 교원채용 업무와 관계된 자는 교원채용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자의 제출서류 처리) ① 지원자는 심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사관리처장은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지원자에게 채용관련 서류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지침)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총원지침과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2. 10.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기본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이상	20	
		750점이상 - 850점미만	18	
		650점이상 - 750점미만	16	
		550점이상 - 650점미만	14	
		450점이상 - 550점미만	12	
		350점이상 - 450점미만	10	
		250점이상 - 350점미만	8	
		150점이상 - 25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총 점			60	

1. 서류심사 대상 연구실적

- 최근 3년 이내 게재(발표)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다만,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년도와 상관없이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심사 대상이 됨.

2. 연구실적물의 양 산정방법

- 연구실적물의 양 산정방법은 이 지침 [별표 4]의 2항, 3항, 4항을 따름.

3.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함.

가.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JCR 기준으로 함.

- A&HCI 등재학술지 게재 대표연구실적물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7점으로 함.

- 대표 연구실적물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0점으로 함.

나.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는 박사학위 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심사 시 게재지의 권위와 질적수준,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4.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학위수여교, 경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5. 채용분야와의 적합도(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 전공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6. 점수산정법

- ① 연구실적물의 양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과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서류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 시,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지정하고, 서류심사 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심사대상인 박사학위 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은 반드시 전문(전체내용)을 탑재한다. 대표실적을 제외한 각 연구실적물의 경우에는 논문제목, 저자수, 주저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의 첫 페이지(또는 논문초록)를 탑재한다.

[별표 1-2] <신설 2014.4.11., 개정 2015.9.22.,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선택 가형)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이론)만 선택 가능
(자연·공학계열, 기초의학계열, 임상의학계열 선택 불가)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이상	20		
		750점이상 - 850점미만	18		
		650점이상 - 750점미만	16		
		550점이상 - 650점미만	14		
		450점이상 - 550점미만	12		
		350점이상 - 450점미만	10		
		250점이상 - 350점미만	8		
		150점이상 - 25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가점 평가 항목	점수 한도 20점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심사 의견	
		B	17		
		C	14		
		D	11		
		E	8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총 점			60		

※ 대표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점수의 합은 가점평가항목 점수를 포함하여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1-3] <신설 2014.4.11., 개정 2015.9.22.,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선택 나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이상	20	
		750점이상 - 850점미만	18	
		650점이상 - 750점미만	16	
		550점이상 - 650점미만	14	
		450점이상 - 550점미만	12	
		350점이상 - 450점미만	10	
		250점이상 - 350점미만	8	
		150점이상 - 25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총 점			60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1-4] <신설 2014.4.11., 개정 2015.9.22.,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선택 다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1200점이상	20	
		1050점이상 - 1200점미만	18	
		900점이상 - 1050점미만	16	
		750점이상 - 900점미만	14	
		600점이상 - 750점미만	12	
		450점이상 - 600점미만	10	
		300점이상 - 450점미만	8	
		150점이상 - 30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총 점			60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 과 동일함

[별표 1-5] <신설 2014.4.11., 개정 2015.9.22.,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선택 라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1200점 이상	20	
		1050점 이상 - 1200점 미만	18	
		900점 이상 - 1050점 미만	16	
		750점 이상 - 900점 미만	14	
		600점 이상 - 750점 미만	12	
		450점 이상 - 600점 미만	10	
		300점 이상 - 450점 미만	8	
		150점 이상 - 300점 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심사의견
		B	8	
		C	6	
		D	4	
		E	2	
총 점			60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1]의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 과 동일함

[별표 2] <개정 2018.4.30.>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 서류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의 건
연구실적물의 양 (일반계열실적 포함)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탁월함	30	심사의견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탁월함	27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우수함	24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보통임	21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다소 부족함	18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부족함	1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일반계열실적 포함)		30	심사의견
총 점		60	

- 모집 전공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발표(게재)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는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체 실적물을 대상으로 일괄 심사함.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함.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독창성·예술성, 학문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 서류심사 점수는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함.
 - 연구실적물의 양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서류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 시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은 3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지정하고, 서류심사 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심사대상인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은 전문(전체내용)을 탑재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등 실무분야의 서류심사 기준표는 상기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 서류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4.30.>

전공적합성 심사 기준표

심사기준 : 전공적합성 심사 시 학력사항, 경력사항, 연구실적물을 통한 주 연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반드시 심사 의견을 기술할 것

1. 심사결과

전공영역 적합성	적합성 여부	
	적 합	부적합

2. 심사의견

반드시 종합 심사의견을 기술할 것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기본형)

구분		심사요소	배점	비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 이상	20	
		750점 이상 - 850점 미만	18	
		650점 이상 - 750점 미만	16	
		550점 이상 - 650점 미만	14	
		450점 이상 - 550점 미만	12	
		350점 이상 - 450점 미만	10	
		250점 이상 - 350점 미만	8	
		150점 이상 - 250점 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논문(대표실적2)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심사의견
		B	17	
		C	14	
		D	11	
		E	8	
총 점			60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

1.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

- 최근 3년 이내 게재(발표)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년도와 상관없이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심사 대상이 됨)

2. 계열별 인정 기준

- 가. 인문·사회계열, 임상의학계열, 예체능계열(이론)
 - 박사학위논문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게재 논문
 - SCOPUS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 국제·국내 특허(발명)등록 실적(출원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자연·공학계열, 기초의학계열

- 박사학위논문
-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게재 논문
- 국제·국내 특허(발명)등록 실적(출원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조경학과 채용분야, 도시공학과 채용분야, 주거환경학과·건축학부의 건축설계 및 건축계획분야, 의류패션학과 의복구성 분야, 병리학교실 병리학 분야, 예방의학교실 직업 환경의학 분야는 SCOPUS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포함

3. 모든 실적물 평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함.(공동저자는 인정하지 않음, 특허제외)

4.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시 인정률 산정법

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text{주저자} : \frac{2}{n+1} \times 300 \text{점}$$

나. SCOPUS 등재 학술지

$$\text{주저자} : \frac{2}{n+1} \times 200 \text{점}$$

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text{주저자} : \frac{2}{n+1} \times 100 \text{점}$$

라. 박사학위논문 : 150점

- 마. 국제특허(발명) : 200점
- 국외 해당 관리기관에 등록된 국제특허(발명) 실적
 - $1/n \times 200$ 점
- 바. 국내특허(발명) : 70점
- 국내 해당 관리기관에 등록된 국내특허(발명) 실적
 - $1/n \times 70$ 점
- 사. 국제특허(발명)와 국내특허(발명)의 점수를 합하여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함.
- 아. 각 실적물에 대한 취득점수 산정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함.
- 차. “n”은 저자 수(또는 발명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또는 발명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함.
- 카. 연구실적물이 모집전공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물 점수의 50%만 인정함.

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함.
- 가.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는 점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JCR 기준으로 함.
 - A&HCI 등재학술지 게재 대표연구실적물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7점으로 함.
 - 대표 연구실적물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0점으로 함.

나.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는 박사학위 논문과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심사 시 게재지의 권위와 질적수준,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학문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6. 점수산정법

- ①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연구실적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별표 4-2] <신설 2014.4.11., 개정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선택 가형)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이론)만 선택 가능
(자연·공학계열, 기초의학계열, 임상의학계열 선택 불가)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 이상	20		
		750점 이상 - 850점 미만	18		
		650점 이상 - 750점 미만	16		
		550점 이상 - 650점 미만	14		
		450점 이상 - 550점 미만	12		
		350점 이상 - 450점 미만	10		
		250점 이상 - 350점 미만	8		
		150점 이상 - 250점 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가점평가항목	점수 한도 40점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논문(대표실적2)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가점평가항목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40		
		B	36		
		C	32		
		D	28		
		E	24		
총 점			60		

※ 대표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점수의 합은 가점평가항목 점수를 포함하여 4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4]의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4-3] <신설 2014.4.11., 개정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선택 나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850점 이상	20	
		750점 이상 - 850점미만	18	
		650점 이상 - 750점미만	16	
		550점 이상 - 650점미만	14	
		450점 이상 - 550점미만	12	
		350점 이상 - 450점미만	10	
		250점 이상 - 350점미만	8	
		150점 이상 - 25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논문(대표실적2)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심사의견
		B	17	
		C	14	
		D	11	
		E	8	
총 점			60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4]의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4-4] <신설 2014.4.11., 개정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선택 다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1200점 이상	20	
		1050점 이상 - 1200점미만	18	
		900점 이상 - 1050점미만	16	
		750점 이상 - 900점미만	14	
		600점 이상 - 750점미만	12	
		450점 이상 - 600점미만	10	
		300점 이상 - 450점미만	8	
		150점 이상 - 30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논문(대표실적2)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심사의견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B		17
		C		14
		D		11
		E	8	
총 점			60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4]의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4-5] <신설 2014.4.11., 개정 2018.4.30., 2024.3.22.>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선택 라형)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1200점이상	20	
		1050점이상 - 1200점미만	18	
		900점이상 - 1050점미만	16	
		750점이상 - 900점미만	14	
		600점이상 - 750점미만	12	
		450점이상 - 600점미만	10	
		300점이상 - 450점미만	8	
		150점이상 - 300점미만	6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1)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논문(대표실적2)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5% 이내	10	
		상위 5% 초과 ~ 10% 이내	9	
		상위 10% 초과 ~ 15% 이내	8	
		상위 15% 초과 ~ 20% 이내	7	
		상위 20% 초과 ~ 25% 이내	6	
		상위 25% 초과 ~ 30% 이내	5	
		상위 30% 초과 ~ 35% 이내	4	
		상위 35%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심사의견
		B	17	
		C	14	
		D	11	
		E	8	
총 점			60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은 [별표 4]의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과 동일함

[별표 5] <개정 2018.4.30.>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의 견
연구실적물의 양 (일반계열실적 포함)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탁월함	30	심사의견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탁월함	27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우수함	24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보통임	21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다소 부족함	18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부족함	1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일반계열실적 포함)		30	심사의견
총 점		60	

- 모집 전공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발표(게재)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는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체 실적물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한다.
-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수준 심사는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대표연구실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평가한다.
 -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수준 심사는 지원자가 지정한 3편 이내의 대표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독창성·예술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점수산정법
 -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연구실적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 법학전문대학원 등 실무분야 연구실적심사 기준표는 상기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8.4.30.>

교육능력심사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의 건
강의능력	1. 강의준비	가. 강의계획 나. 강의준비 충실성	30	심사의견
	2. 강의내용	가. 강의내용의 체계성 및 적절성 나. 강의내용의 우수성 다. 관련 지식 수준 등		
	3. 강의방법 및 태도	가.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 강의의 숙련도 다. 질의응답 태도		
	4. 외국어 강의능력	가. 외국어 표현 능력 나.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 및 잠재력	1. 인성		10	심사의견
	2. 잠재력			
총 점			40	

1. 점수산정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1점 단위로 점수 부여함.
3. 실기계열(예체능·건축설계 실기계열)은 강의능력에 실무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함.

[별표 7] <개정 2015.5.1., 2024.3.22.>

면 접 심 사 조 서				
출원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학부(과) 심사결과	구 분	취득점	단계별 순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			
	총 합			
면접 심사요소 및 판정				
구 분	심사요소		심사의견	
심사 내용	인성 및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교육능력 및 기여 의지		우수, 보통, 미흡	
	연구능력 및 잠재력		우수, 보통, 미흡	
	외국어 능력		우수, 보통, 미흡	
종합평가	탁월	우수	미흡	부적격
종합의견	종합 의견 기술			
면접위원 : (인)				

※ 종합평가 시 판단 기준

심사의견	판 단 기 준
탁월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가 모두 ‘우수’ 로 평가될 경우
우수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2개 이상일 경우
미흡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1개 이하일 경우
부적격	전체 심사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 으로 평가될 경우

[별표 8]

서 약 서

본인은 영남대학교 0000학년도 0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위원으로
서 영남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및 심사지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함은 물론 전형관리상의 제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교원채용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